

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년월일 : 1998년 8월 27일

제안자 : 박재수의원의 6인

1. 수정이유

도행정조직의 개편에 있어서 업무 기능상 효율적이지 못한 문화진흥국의 분장사무중 주택건설 및 건축행정 업무를 건설교통국으로 조정하여 기존의 주택과에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행정을 추진토록 하고

행정부지사 직속기구인 여성정책관실에 두기로 하였던 생활개선지도 업무를 충청북도농업기술원으로 조정하여 농촌부녀자의 조직운영과 농촌 의생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지도하도록 하며

현행 조문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문규정은 자구정리하고 행정기구는 공식명칭을 사용하도록 함.

2. 수정 주요골자

- 문화진흥국 분장사무중 “주택건설, 건축종합계획 수립 및 주거환경개선”과 “건축문화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육성” 업무는 삭제하고(안 제11조 제8호~제9호)
- 건설교통국의 분장사무에 「건축행정 및 주택건설」에 관한 업무를 충청북도농업기술원에 「농촌 생활개선 지도」 사무를 신설함.(안 제12조 제13호~제14호, 제26조 제13호)
-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행정기구 명칭을 공식명칭으로 함(안 제5장 제2절~4절, 제6장 제1절~제6절)

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장 직속기관중 “제2절 지방공무원교육원”을 “제2절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”으로, “제3절 농업기술원”을 “제3절 충청북도농업기술원”으로, “제4절 보건환경연구원”을 “제4절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”으로 한다.

안 제6장 사업소중 “제1절 개발사업소”를 “제1절 충청북도개발사업소”로, “제2절 도로관리사업소”를 “제2절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”로, “제3절 산림환경연구소”를 “제3절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”로 “제4절 축산위생연구소”를 “제4절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”로, “제5절 여성회관”을 “제5절 충청북도여성회관”으로, “제6절 내수면개발시험장”을 “제6절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”으로 한다.

안 제3조(조직)중 “의회사무처를 두고”를 “의회사무처와”로 한다.

안 제10조(농정국)제12호중 “보호외”를 “보호와”로 한다.

안 제11조(문화진흥국)중 “8. 주택건설, 건설종합계획 수립 및 주거환경 개선” 및 “9. 건축문화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육성”을 삭제한다.

안 제12조(건설교통국)중 “제13호” 및 “제14호”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주택건설, 건설종합계획 수립 및 주거환경 개선

14. 건축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육성

안 제19조(운영) 및 제23조(운영)중 “따로”를 삭제한다.

안 제26조(업무)중 “제9호-제13호”를 “제8호-제12호로 하고,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농촌 생활개선 지도

안 제52조(설치) 제2항중 “충주시에”를 “충주시 관내에”로 한다.